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4. 11. 28.

제안자 : 국방위원장

수정이유

안 제10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서 「주택법」 제57조의 분양가상한제¹⁾를 준용토록 함으로써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무주택 군인에 대한 주택 공급에 대하여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토록 하고 있음.

다만, 「주택법」은 분양가상한제(제57조)를 도입하면서 이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의무(제57조의2), 거주실태 조사(제57조의3), 등의 규정²⁾을 두고 있는데, 안 제10조의2는 이상의 분양가상한제와 연계된 제도도 함께 적용하고자 하는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와 연계된 「주택법」의 제도들에 대한 준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분양가상한제와 연계된 제도인 「주택법」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64조, 제92조, 제100조, 제101조제1호의3·제2호, 제104조제10호 및 제

1)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설명은 참고자료 3 참조.

2) 관련 규정은 참고자료 4.참조

106조제4항을 준용함.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0조의2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주택분양가격 제한 등에 따른 입주자의 거주 의무 등, 주택 등의 거주실태조사,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한다)의 전매행위 제한 등 및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64조 및 제9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의3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방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방부”로 보며, 같은 법 제64조제7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령”은 “대통령령”으로 보며, 같은 법 제92조의 “시·도지사”는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중 입주자의 거주 의무 등, 주택의 거주실태조사,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00조, 제101조제1호의3·제2호 및 제104조제10호를 준용한다.

④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중 입주자의 거주 의무 위반, 주택의 거주실태조사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0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u><신 설></u>	<u>제10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u> <u>제10조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일반채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제54조”는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4항”으로 본다.</u> <u><신 설></u>	제10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제1항의 주택분양가격 제한 등에 따른 입주자의 거

주의무 등, 주택 등
의 거주실태조사,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한다)의
전매행위 제한 등
및 분양권 전매 등
에 대한 신고포상
금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7조
의2, 제57조의3, 제
64조 및 제9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의3
의 “국토교통부장
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국방
부장관”으로, “국토
교통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는 “국방
부”로 보며, 같은
법 제64조제7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령”은
“대통령령”으로 보

<신 설>

<신 설>

<신 설>

며, 같은 법 제92조
의 “시·도지사”는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중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주택
의 거주실태조사,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
여는 「주택법」
제100조, 제101조제
1호의3·제2호 및 제
104조제10호를 준
용한다.

④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중 입주자의
거주의무 위반, 주
택의 거주실태조사
등에 대한 과태료
에 관하여는 「주
택법」 제106조제4
항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u>에 필요한 사항은</u> <u>대통령령으로 정한</u> <u>다.</u>
--	--	---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66
----------	------

발의연월일 : 2024. 8. 22.

발 의 자 : 안규백 · 조 국 · 윤준병
장종태 · 허성무 · 정성호
부승찬 · 안태준 · 문진석
임종득 · 김영환 · 박선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를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하여 해당 법 조항에 따라 우선하여 매각한 사례가 전무함. 이에 따라 안정적으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개발이익을 군인의 복지를 위해 환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국방·군사시설 이전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렇게 공급하는 주택에 관하여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하며, 입주자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주택 군인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조의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전단 중 “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를 “일반재산을”로, “공급하는”을 “공급하려는”으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이를”을 “매각하려는 경우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로, “매각할”을 “공급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거나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자(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주택 공급을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주체의 입주자 선정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시

장·군수·구청장”은 “국방부장관”으로, “제54조”는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제4항”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주택분양가격 제한 등에 따른 입주자의 거주 의무 등, 주택 등의 거주실태조사,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포함한다)의 전매 행위 제한 등 및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64조 및 제9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의3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방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방부”로 보며, 같은 법 제64조제7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령”은 “대통령령”으로 보며, 같은 법 제92조의 “시·도지사”는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중 입주자의 거주 의무 등, 주택의 거주실태조사, 주택의 전매 행위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00조, 제101조제1호의3·제2호 및 제104조제10호를 준용한다.

④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중 입주자의 거주 의무 위반, 주택의 거주실태조사 등에 대한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0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 및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 ① . ② (생략) ③ 국방부장관은 국방·군사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용도폐지된 <u>잡종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u>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u>공급하는 용도로</u> <u>사용하려는 자에게</u> 이를 우선하여 <u>매각할 수 있다.</u> 이 경우 「국유재산법」 제49조에 따라 해당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	제10조(주택의 우선공급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u>일반재산을</u> ----- ----- <u>공급하려는-----매각하려는 경우 군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공급할-----</u> ----- ----- ----- ----- ----- ----- ④ 제2항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거나 제3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려는 자(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주택 공급을 위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신 설>

⑤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주체의 입주자 선정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신 설>

제10조의2(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택
지를 공급받거나 같은 조 제3
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입하
여 무주택 군인을 대상으로 주
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
택법」 제5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시장·
군수·구청장”은 “국방부장관”
으로, “제54조”는 “「군인복지
기본법」 제10조제4항”으로 본
다.

② 제1항의 주택분양가격 제한
등에 따른 입주자의 거주 의무
등, 주택 등의 거주실태조사,
주택(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
정된 지위를 포함한다)의 전매
행위 제한 등 및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에 관하

여는 「주택법」 제57조의2, 제57조의3, 제64조 및 제9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57조의3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방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방부”로 보며, 같은 법 제64조제7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령”은 “대통령령”으로 보며, 같은 법 제92조의 “시·도지사”는 “국방부장관”으로 본다.

③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중 입주자의 거주 의무 등, 주택의 거주실태조사,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100조, 제101조제1호의3·제2호 및 제104조제10호를 준용한다.

④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중 입
주자의 거주 의무 위반, 주택의
거주실태조사 등에 대한 과태
료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
10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